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1376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강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기혁, 채시라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33,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를 경영하면서 이동통신 대리점, 핸드폰 도소매업을 하는 F으로부터 합계 90억여 원을 다음과 같이 편취 당하였다. ① 2019. 8. 14.경 G회사 소유의 PDA 600대를 E 소유라고 속여서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960,000,000원을 편취 당하였고, ② 2019. 10. 28.경 사실은 E가 H보험과 사이에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 1,200대에 대한 유지보수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H보험 명의의 유지보수계약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서류들이 마치 진정한 계약서들인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와 사이에 갤럭시노트10 1,200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 1,200대 시가 1,434,342,000원 상당을 편취 당하였으며, ③ 2020. 8. 3.경 사실은 E가 G회사과 사이에 아이패드 7세대 2,940대에 대한 유지보수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G회사 명의의 유지보수계약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서류들이 마치 진정한 계약서들인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이패드 7세대 2,940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815,3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2,940대를 편취 당하였고, ④ 2020. 12. 하순경 E의 원고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무가 40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원고의 담당직원 I에게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 재고를 갖고 있는데 이를 팔기 위해서는 최신 인기모델 스마트폰이 추가로 필요하고 최신 스마트폰을 공급해 주면 재고 스마트폰과 함께 판매하여 기존 미수금을 포함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 I을 통하여 2021. 1. 4.경부터 2021. 2. 22.경까지 합계 4,726,986,544원 상당의 스마트폰 4,183대를 편취 당하였다.

나. F과 그의 모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F은 2020. 3. 6. 자신의 지분 1/2을 C에게 증여하였다.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J회사의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과 피고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2021. 3.경 F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었고, C은 2021. 4. 14.경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위 J회사의 근저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날인 2021. 4. 15. K회사에게 채권최고액 8억 1,960만 원의 근저당권,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2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원고는 2021. 6.경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C은 2021. 8.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10억 4,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원고가 C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2022. 5. 18. F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2억 3,3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C은 원고에게 2억 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위와 같이 K회사과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2020. 3. 6. 자신의 지분 1/2을 C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C이 2021. 4. 14.경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위 J회사의 근저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함으로써 원고가 C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갖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원고가 C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2022. 5. 18.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가액배상으로 C은 원고에게 2억 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가액배상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0억 4,800만 원 상당임에 반하여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날인 2021. 4. 15. K회사에게 채권최고액 8억 1,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다시 채권최고액 3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C은 모자관계이고 C과 피고가 자매인 점, C이 앞선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K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8억 1,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직접적으로 채무가 없으면서 단지 사기 피의자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잔존 가치를 초과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해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33,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L, M에 있는 N아파트 O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P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층 896.285㎡, 2층 885.28㎡, 3층 885.28㎡, 4층 885.28㎡, 5층 885.28㎡, 6층 885.28㎡, 7층 465.93㎡, 8층 465.93㎡, 9층 465.93㎡, 10층 465.93㎡, 11층 465.93㎡, 12층 465.93㎡, 지층 741.685㎡

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노인정 및 관리사무실 1층 61.88㎡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지붕 지층 기계실 및 전기실 지층 71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Q호 59.9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L 3077.8㎡
2. 서울특별시 송파구 M 1234.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비율 4311.9분의 40.343

